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(이하 “본 변경계약서”)는 2024 년 1 월 [5]일 주식회사 맵그로브제 1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(이하 “을”)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다.

전 문

“갑”과 “을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2-11외 9필지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, 임대운영 및 처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6일 자산관리위탁계약(이하 “본건 자산관리위탁계약”)을 체결하였는 바, 본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(계약해지 사유의 추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건 자산관리위탁계약 「별지 2. 계약의 해지」의 제 1 조(계약해지 사유) 제 2 항 다. 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(신설)하기로 한다.

별지 2. 계약의 해지

1. 계약해지 사유

① (기재 생략)

②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중도해지할 수 있다.

가. “을”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

나. “을”이 관련 법령을 중요하게 위반하여 “을”에게 정부기관에 의한 중대한 제재가 내려진 경우. 본 호에서의 중대한 제재라 함은 (가)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“을”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, (나)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“을”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“갑”과 “을” 등이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28조 제2항, 제35조 제2항에 따라 “갑”의 모리츠로부터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

제 2 조 (기타)

- ① 본 변경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은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한다.
- ③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중 본 변경계약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.

(다음 면의 기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)

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 년 1 월 5 일

“갑”

주식회사 맨그로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대표이사 박 영 희 (인)



“을”

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대표이사 민 관 식 (인)

